

# 군산 한성필하우스 분양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2.26)입니다. (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2009년4월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공급하는 아파트 35.4192㎡, 59.9370㎡, 59.9567㎡, 59.9519㎡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을 받아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한 국민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 국민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26) 현재 군산시 및 전라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군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 국가 재 출국시 해외 체류로 봄)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 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 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 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본 아파트는 총 892세대 중 537세대를 금회 일반공급 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12년 08월 29일 사용승인(준공)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공급된 공공건설임대주택(10년)/국민주택입니다.
- 각 세대에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입주자가 설치한 시설물은 당사가 설치한 시설물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본 아파트는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시설물(보일러, 도시가스, 도배, 타일,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목문, 기타타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 및 청소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주택개발일(※당첨자에 한함)에 현장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여,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 없음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신청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전용면적 40㎡이하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② 납입횟수가 많은 자
전용면적 40㎡초과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무주택기간 산정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무주택 기간 (만 30세가 되는날부터,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등재일) ②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 산정

- 2순위 경쟁이 있거나,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feeIhaus.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한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1순위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1년 03월 08일(월)	2021년 03월 09일(화)	2021년 03월 15일(월)	2021년03월 26일(금) ~ 2021년 03월 30일(화)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			당사 분양사무실 (군산시 요죽길 76 상가 104호)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담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와 관계법령이 상충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주택행정과 - 6337호(2021.02.26)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길 76 (오식도동 806-3번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 지하 1층, 지상23층, 12개동 총 892세대 중 일반공급 537세대
- 입주예정일 : 잔금 납부 후 즉시
- 공급대상

(단위:㎡,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금회 일반공급 세대수	세대별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포함)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국민 주택	2021000061	035.4192	35	4	035.4192	014.7889	050.2081	015.8340	066.0421	021.1939	2
	2021000061	059.9370	59A	465	059.9370	024.4871	084.4241	026.7946	111.2187	035.8646	22
	2021000061	059.9567	59B	17	059.9567	022.6664	082.6231	026.8034	109.4265	035.8764	1
	2021000061	059.9519	59C	51	059.9519	023.8442	083.7961	026.8012	110.5973	035.8736	1

■ 국민주택 공급금액

(단위:㎡, 원)

주택형	구분	동	층 구분	해당 세대수	주택도시기금	분양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035.4192	35	101동	1층	1	28,500,000	64,400,000	6,440,000	57,960,000
			5~13층	1	28,500,000	69,900,000	6,990,000	62,910,000
		110동 111동	1층	1	28,500,000	65,700,000	6,570,000	59,130,000
			5~9층	1	28,500,000	71,400,000	7,140,000	64,260,000
소 계				4				
059.9370	59A	101동	2층	1	46,500,000	115,100,000	11,510,000	103,590,000
			3층	1	46,500,000	116,600,000	11,660,000	104,940,000
			4~14층	22	46,500,000	119,500,000	11,950,000	107,550,000
		102동 107동	1층	5	46,500,000	110,600,000	11,060,000	99,540,000

			2층	7	46,500,000	113,000,000	11,300,000	101,700,000
			3층	5	46,500,000	115,400,000	11,540,000	103,860,000
			4층	10	46,500,000	117,900,000	11,790,000	106,110,000
			5층	10	46,500,000	119,100,000	11,910,000	107,190,000
			6~20층	126	46,500,000	120,300,000	12,030,000	108,270,000
			21층	7	46,500,000	119,700,000	11,970,000	107,730,000
		103동 106동	1층	8	46,500,000	109,500,000	10,950,000	98,550,000
			2층	7	46,500,000	111,900,000	11,190,000	100,710,000
			3층 2~6라인	4	46,500,000	114,400,000	11,440,000	102,960,000
			4층	10	46,500,000	116,700,000	11,670,000	105,030,000
			5층	10	46,500,000	117,900,000	11,790,000	106,110,000
			6~16층	78	46,500,000	119,100,000	11,910,000	107,190,000
		104동 105동	17층	8	46,500,000	118,500,000	11,850,000	106,650,000
			1층	5	46,500,000	116,100,000	11,610,000	104,490,000
			2층	7	46,500,000	118,700,000	11,870,000	106,830,000
			3층	2	46,500,000	121,200,000	12,120,000	109,080,000
			4층	7	46,500,000	123,700,000	12,370,000	111,330,000
		108동	5~14층	8	46,500,000	126,300,000	12,630,000	113,670,000
			1층	2	46,500,000	113,900,000	11,390,000	102,510,000
			2층	2	46,500,000	115,100,000	11,510,000	103,590,000
			3층	2	46,500,000	118,800,000	11,880,000	106,920,000
			4~19층	21	46,500,000	123,700,000	12,370,000	111,330,000
		110동 111동	20층	2	46,500,000	123,100,000	12,310,000	110,790,000
			1층	2	46,500,000	113,900,000	11,390,000	102,510,000
			2층	4	46,500,000	115,100,000	11,510,000	103,590,000
			3~4층	8	46,500,000	121,300,000	12,130,000	109,170,000
			5~7층	12	46,500,000	122,500,000	12,250,000	110,250,000
		소 계	8~15층	32	46,500,000	123,700,000	12,370,000	111,330,000
			16~23층	30	46,500,000	122,500,000	12,250,000	110,250,000
소 계				465				
059.9567	59B	109동 112동	1층	1	46,500,000	108,500,000	10,850,000	97,650,000
			2층	1	46,500,000	117,600,000	11,760,000	105,840,000
			3~6층	5	46,500,000	119,000,000	11,900,000	107,100,000
			7~16층	6	46,500,000	125,000,000	12,500,000	112,500,000
			17~23층	4	46,500,000	124,400,000	12,440,000	111,960,000
소 계				17				
059.9519	59C	109동	1~2층	2	46,500,000	114,000,000	11,400,000	102,600,000
			3층	2	46,500,000	116,500,000	11,650,000	104,850,000
			4~5층	4	46,500,000	120,100,000	12,010,000	108,090,000
			6~22층	30	46,500,000	122,600,000	12,260,000	110,340,000
			23층	2	46,500,000	121,400,000	12,140,000	109,260,000
		112동	2~4층	3	46,500,000	123,700,000	12,370,000	111,330,000
5~16층	8		46,500,000	126,300,000	12,630,000	113,670,000		
소 계				51				

#### ■ 일반분양 공통사항

- 상기 금액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에 의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주택은 당초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2012년8월 준공 후 공사대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내·외부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 상태로 분양하는 주택임.
- 본 아파트는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시설물(보일러, 도시가스, 도배, 타일, 욕실, 싱크대, 세대별석, 목문 기타타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 및 청소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2009년4월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하여 표기하였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어 있는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경비실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경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2.71%)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 연체료를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당사 지정된 계좌로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예금은행가중평균금리 (주1)	가산금리	연체금리
연체시 (납부일 익일부터 적용)	2.71%	3%	5.71%

(주1) 한국은행발표 (2020.12.30) 2020년 1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3.3058 또는 형별면적(㎡) × 0.3025)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b>신청 자격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 및 전라북도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당첨자 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li> <li>-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li> </ul>
<b>청약신청 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li> <li>-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li> <li>-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 접수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4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음.</li> <li>-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li> <li>-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함.</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li> <li>-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재사용 불가함.</li> <li>- 본 아파트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첨사실 삭제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li> <li>-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당첨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li> <li>- 본 아파트를 반드시 방문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청약신청한 주택은 접수마감 후 변경 불가함)</li> <li>-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함.</li> <li>- 일반공급 1,2순위 신청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람.</li> <li>-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li> <li>-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람,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람.</li> </ul>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 분	주택형	신청구분	청약관련 신청자격
국민주택	전주택형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6회 이상 납입한자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자 (가입 후 경과기간 및 월납입금 납입 횟수와 상관없음)로써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3)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5)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등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공유지분 소유 시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아래의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에 관한 적용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
    - 분양권 등 신규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주택형태로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 [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8.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1.03.08(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1.03.09(화) 08:00~17:30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시 사용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부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방문접수시간:09:00~16:00)
- ※ 청약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한국부동산원(주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또는 네이버인증서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또한 네이버인증서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 비 사 항	
<b>본인 신청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포함) 통장</li> <li>· 통장인장 또는 본인서명</li> </ul>	
<b>제3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포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li> </ul>	
	<b>인감증명 방식</b>	<b>본인서명확인 방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li> </ul>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신청(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금회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만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공급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함.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순번 발표	계약장소
<b>일반공급</b>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1.03.15 (월)</li> <li>· 확인방법</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li> <li>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당첨일로부터 10일간)</li> <li>※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1.03.26(금) ~ 03.30(화)</li> <li>(10:00 ~ 16:00)</li> <li>· 장소 : 당사 분양사무소</li> <li>(전라북도 군산시 요죽길 76)</li> </ul>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 홈페이지(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분양사무소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또는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 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초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3.15(월) ~ 2021.03.24.(수) (10일간)
인터넷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 2021.03.15.(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모바일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① 선정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아래와 같이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1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차</li> </ul>						
	<table border="1"> <tr> <td>전용면적 40㎡이하</td> <td>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② 납입횟수가 많은 자                 </td> </tr> <tr> <td>전용면적 40㎡초과</td> <td>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td> </tr> <tr> <td>무주택기간 산정</td> <td>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무주택 기간 (만 30세가 되는날부터,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등재일)                      ②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 산정                 </td> </tr> </table>	전용면적 40㎡이하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② 납입횟수가 많은 자	전용면적 40㎡초과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무주택기간 산정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무주택 기간 (만 30세가 되는날부터,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등재일) ②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 산정
	전용면적 40㎡이하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② 납입횟수가 많은 자					
	전용면적 40㎡초과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무주택기간 산정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무주택 기간 (만 30세가 되는날부터,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등재일) ②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순위 경쟁이 있거나,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li> <li>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li>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선정</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의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li> </ul>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구 분	계약일정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1.03.26(금) ~ 2021.03.30.(화), 3일간, 10:00-16:00	당사 분양사무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오죽길 76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분양사무실 제출 [분양사무실 계약금 수납 불가]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1,2순위 당첨자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 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계약기간 내에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602-795741	한성건설(주)	입금시 송금인은 반드시 동·호수 및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 '1010101홍길동' 으로 기재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에 우리은행 본·지점 무통장 입금(타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계약시 구비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포함)로 간주함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시	0		계약금	-	- 세대별 아파트 계약금을 입금한 무통장 입금 영수증
	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0		주민등록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발급
	0		주민등록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발급 요망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 제출시 본인만 인정되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0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시는 제출 생략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0		무주택 소명서류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0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요구하는 인정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본인의 모두)	0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0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대리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발급분에 한함,
	0		인감도장	청약자	- 계약용
	0		대리인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등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2.2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판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계약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6개월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수도권,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 : 1년, 일반지역 : 6개월, 청약위축지역 : 3개월)]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신청한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 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 관련 통장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① 청약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② 1순위자의 경우 각 당첨 구분의 주택소유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③ 당첨자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로 판명될 경우

■ 계약자 대출안내

- 당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임.
- 주택도시기금 금액 35.4192㎡ :₩28,500,000, 59.9370㎡ :₩46,500,000, 59.9567㎡ :₩46,500,000, 59.9519㎡:₩46,500,000  
위 주택도시기금 금액은 주택을 분양받은 분양계약자가 용자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능 세대별 용자금액을 잔금 납부시 잔금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하며 입금된 잔금은 기금 대출금 상환에 총당됨. 또한 분양시점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용자 세부내용 안내

구 분	내 용
대 출 시 기	- 잔금으로 용자 전환
대 출 금 액	- 35.4192㎡ :₩28,500,000 / 59.9370㎡ :₩46,500,000 / 59.9567㎡ :₩46,500,000 / 59.9519㎡ :₩46,500,000
비 고	- 대출금액,상환기간,금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대한 은행에 상담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세부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으로 대출 자격여부 및 세부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대한 은행에 상담하여야 합니다.
- ※ 계약자가 신용관리 대상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 될수 있습니다.
- ※ 대출조건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및 은행의 정책,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어린이 놀이터2곳) 보육시설 등

■ 유의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10%)을 공제함.
-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잔금 납부 후 즉시입주가능.
- 샘플세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사무소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사무소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아파트 위치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는 계약 체결 시 분양사무소에 비치된(필요시 세대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과 무관한 사항임.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주체에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의 가진 자가 분양을 받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허가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본인의 책임으로 확인 및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및 계약 전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람,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층세대 및 저층세대는 보행동선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와는 별도의 구획이므로 향후 각 대지분별에 따른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지상부 DA, 쓰레기 분리수거장, 상가 실외기, 등으로 인하여 주변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청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시행,시공사 : 한성건설(주) (법인번호161511-0015143)

■ 분양사무소: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길 76 (분양문의 ☎ 063-464-7551)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소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